

「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
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의2)
-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0조)
-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0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전시콘텐츠 보강 등을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,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인 정책과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.